

| | | | | |
|--|----------------------|-------------------------------|--|----------------------------|
| 분류기호 문서번호 | 지총 30500-446 | 기안용지 (전화: 773-7350) | | 시행상 특별취급 |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 10.5.3.1. | 본부장 | | |
| 수신처 보존기간 | | 결재 1990.3.23 새활천부장 | | |
| 시행일자 | '90. 3.22 | 영조 | | |
| 보조 기간 | 차장 | 합 조 기 관 | 법 무 담 당 관 심 사 관 법 제 기 장 | 문 서 통 계 |
| | 총무부장 | | | 검 열 1990.3.23 동계관 |
| | 공리과장 | | | 발 송 인 |
| 기안책임자 | 오장섭(구자길) | | | |
| 경유 수신 참조 | 각안참조 | 발신 명의 | 본 부 장 | 1990.3.23 국무총리 |
| 제 목 | 용역수행 신문공고 의뢰 | 고시(공고) 1990.3.23 제 164호 | | |
| (제1안) 내부결재 | | | | |
| 1. 우리본부가 시행하는 아래 실시 설계용역 사업제안서 제출 공고안 을 첨부와 같이 신문공고 의뢰고져 합니다. | | | | |
| 가. 용역명: 저야철 5오선 차방기재(방화.고덕)실시설계 용역 (전기.신호통신.제외) | | | | |
| 나. 계약방법: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입채선정 후 경쟁 입찰. | | | | |
| 다. 작업수행 계획서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20일 | | | | |
| 라. 입채선정 방법: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건설 | | | | |

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제11조에 의한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방법에의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20일간

첨부: 실시 설계용역 제안서 제출공고안 1부. 끝.

(제2안)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공보관

제목 같은건

1. 우리본부가 시행하는 실시 설계용역 사업 제안서 제출 공고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신문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실시 설계용역 제안서 제출 공고안 3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164 호

| | | |
|------|-------------|--------|
| 고고상과 | 1990. 3. 22 | 제 74 호 |
| 담당자 | 법세세장 | 법무담당관 |

실계용의 제안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할 실계용의 용역
 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3.

서울특별시청

1. 실계용의 제안목적

지하철 5호선 당과, 고의 차량기지 실계용의 (전기, 신모, 동산제외)

2. 참가자격

기술용역에 관한 제3조 및 제2조의4항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제3조

1)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법" 제21조의 1에 명시된 서울시 소재 건축사
 사무소와 공동으로

가. 지하철 건설실계용에 관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하철 건설실계용에 관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최근 5년간 서울시 건축상 수상업체

다. 서울시 시행 연상금모의 당선 실적업체 (건축분야)

2) 종합건설 기술용역 업체가 없거나 1) 항목 제3조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을 시는 직접 용역 수행가능

3) 법, 1개 외사가 1개 차량기지만 각각 1개 업체와 공동으로
 가능

3) 법, 1개 외사가 1개 차량기지만 각각 1개 업체와 공동으로
 가능

3. 제안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 90.3.26 - 90.3.31. 13:00

나. 제안서 제출 : ~~90.3.28~~ 90.4.15 까지

다. 제안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설계감리실

· 기탁사항

가. 제안안내서 및 국입지시서는 공고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설계감리실에서 교부

나. 제안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규정(용역사업 수행 능력 평가방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개업체를 선정하여 입찰한다

다. 제안 안내서 및 국입지시서 교부시는 업체 대표자가 인장자감 직접수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 동계부상 동계된 임원(이사 또는 감사)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탁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설계감리실 (773-6930)로 문의 바랍니다.

